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2024.09.26.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5.11.17.)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양부남의원	2025.03.06.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5.11.17.)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7.1.)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7.)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법률 제 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
2. 중앙행정기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의 발

급·이용·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의2.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3.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4.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 2. 중앙행정기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벌칙) ①·② (생 략)	제7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신 설>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신 설>	1의2.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

	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신 설>	1의3.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4.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1. (생 략)	1의5. (현행 제1호와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